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07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이재관 · 김남근 · 이훈기
이주희 · 장철민 · 박희승
안도걸 · 송재봉 · 박용갑
장종태 · 박지원 · 김 윤
주철현 · 권향엽 · 최혁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지정하며, 각각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조성은 주변 산업생태계의 수요나 분석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남발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지정 후 착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성장기업은 판교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전조사를 통해 산업단지를

적정입지에 배치함으로써 혁신성장기업을 수도권 외 지방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기업의 지방으로의 확산 등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8(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이하 “사전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규모 등 산업생태계 현황
2. 기업 및 연구소의 선호도 등 입주 수요
3. 산업환경 변화 전망과 입지 여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8(산업단지 지정에 위한 사전조사)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이하 “사전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u> <u>1.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규모 등 산업생태계 현황</u> <u>2. 기업 및 연구소의 선호도 등 입주 수요</u> <u>3. 산업환경 변화 전망과 입지 여건</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